##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78

발의연월일: 2022. 6. 15.

발 의 자: 권칠승·이원택·김승남

김철민 • 이용우 • 박광온

도종환 · 김태년 · 김회재

김의겸 · 김정호 · 소병훈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업을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 간 협업 뿐 아니라 대학이 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술개발 협력 만족 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중소·중견기업 간 협업 뿐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 정하는 자도 협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협업사업을 촉진하려는 것 임(안 제2조제9호). 법률 제 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협업"이란 중소기업자(제1	9
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품 개	
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	
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	
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u>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u>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u>는 자</u>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